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9. 2. 이필레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20. 9. 3.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 9.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필레 의원

가. 제안이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있는 외국인 학생 포함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도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외국인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 우리구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현재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마포구로 되어 있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외국인 학생은 5명으로 파악 되었으며, 그 밖에 상암동에 위치한 외국인 특수학교로 “드와이트스쿨”과 “일본인 학교”가 있음.
- “드와이트스쿨은” 미국 뉴욕시에서 개교한지 100년이 넘는 외국인 학교로 상암동에는 2012년 개교하여 주로 외국인 공관, 교수, 상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며, “일본인학교”는 1972년 용산구 한남동에서 개교하여 2010년 상암동으로 이전한 학교로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
- 검토 종합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습자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법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연간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드와이트스쿨” 학생과 국민정서에 반하여 “일본인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